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정점식・이종성・송언석

김용판・조수진・김희국

한무경 · 성일종 · 김도읍

김태호 · 임이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폐쇄, 외식산업 위축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관계 종사자 및 서민들의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조합법인 등 관계 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 폐지될 예정임으로 최근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도가 당분간 지속 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축산업, 어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현행 2020년까지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4항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한 감면) ①
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	
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0년</u> 12월 31	<u>2023년</u>
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2

어그	=	하	나	에	하	당	하	는		시	설	로
서	대	통	렁	렁	<u> </u>	1	정	하	는		기	준
에	적	합	한	入	Ì설	을	-	농 (겁	용-	<u>0</u>	로
직	접	사	용	하기	7]	위	하	여	:	취	득	하
는	경	우	Č	해도	당	농	업	용		시	설	에
대경	해스	는	- 3	취득	투서	의]	100)분	- 0]	50
을	<u>20</u> 2	201	<u>년</u>	12	월	31	일	까	-ス]	경	감
한[구 .											

- 1. ~ 3. (생략)
- ③ ④ (생 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 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u>2020</u>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지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
	-
	-
<u>2</u> ()
<u> 23년</u>	-
<u>.</u>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3년</u>	_
②	_
	_
2023	3
년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_
	_
	_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저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u>2023년</u>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 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 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 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2023년</u>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75를 <u>2020년</u>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 1. 2. (생략)
-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생 략)
-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u>2020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 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2023년
1.•2. (현행과 같음)
②
<u>2023년</u> -
,
③ (현행과 같음)
4
2023년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00001-1
<u>2023년</u>

감한다.

- 1. 2. (생략)
-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u>2020년</u>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 (생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7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 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 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u>2023년</u>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 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③
<u>2023년</u>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 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

<u>2023년</u>
·.
② (현행과 같음)
세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
<u> 3년</u>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